

3자녀이상 전기요금 20% 요금할인제도 시행안내

문의 |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(국번없이 123)

정부와 한전은 출산장려를 위해 2009년 8월분 전기요금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간 전기요금의 20%를 할인하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가구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적용대상 : 3자녀 이상 가구
-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자 “자(子)” 3인 이상 또는 “손(孫)”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고객
- ※ 이미 대가족요금을 적용받으시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
■ 요금적용방법

• 요금적용기준

세대원수	자녀수	적용요금제
5인 이상	3자녀 미만	대가족요금
5인 이상	3자녀 이상	3자녀이상가구 요금
5인 미만	3자녀 이상	3자녀이상가구 요금

* 전기요금 복지할인 적용가구는 3자녀이상가구 요금이 아닌 대가족요금 적용

• 3자녀이상가구 요금

- 할인율 : 해당월 전기요금의 20% 할인
- 3자녀이상가구 전기요금 할인액이 대가족가구 요금 할인액 보다 적은 경우 대가족요금을 적용

* 대가족가구 할인금액 \geq 3자녀이상가구 할인금액 : 대가족요금 적용

* 대가족가구 할인금액 < 3자녀이상가구 할인금액 : 3자녀이상가구 요금

• 대가족 요금(월 301~600kWh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 적용)

구분	100이하	101~200	201~300	301~400	401~500	501~600	600초과
일반가구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5단계	6단계	6단계
대가족	일반가구와 같음			3단계	4단계	5단계	6단계

- 전력량요금뿐만 아니라 기본요금도 한단계 낮은 요금적용
- 주택수가구 적용고객은 가구당 평균 사용량, 소형 열병합아파트 등은 호별 평균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적용

■ 신청방법 : 지점방문, 전화(신청서 FAX 제출), APT는 관리사무소 신청가능

■ 시행일 : 2009. 8월분 전기요금부터 (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)